

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5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개정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 - 1) 조례의 목적을 자원순환 촉진으로 구체화 및 상위법 조항 삭제에 따른 정비
- 나.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삭제 (안 제3조)
 - 1) 상위법 제7조 삭제에 따른 근거 규정 삭제 필요
- 다. 의류수거함의 관리·운영 기준 도입(안 제6조의2)
 - 1)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자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6. 1. 21.~2026. 2. 10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안 반영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개선안 반영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

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, 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관계 사업자에 대해 홍보·지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

여야 한다.

②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
후에너지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」을 따른다.

제5조 중 “법 제12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12조의3제2항”으로, “환경
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”을 “재활용”으로, “재활용
될”을 “재활용될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재활용가능지원 분리수거용기의 설치)”를 “(재활용가
능지원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
“설치 할”을 “설치할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의류수거함의 설치·관리 등)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
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(이하 “수거함”이라
한다)의 설치기준, 색상,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
야 한다. 이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, 접근성 및 이용 안
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
우에는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과정에서
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 수거함의 운영 방법
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와 시장이 정하는 바
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1조”를 “법 제31조제1항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9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”를 “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추진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부터 제1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「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재활용 추진협의회)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자원순환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자원순환과장 정 태 현
	팀장 직위 · 성명	자원재활용팀장 신 동 섭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소 라 (031-790-537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 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“ 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“ 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책무를 진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,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	<p>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하남시장은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, 인력확보 및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

및 시행

4.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
계획수립 및 시행

제3조(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)

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
경기도의기본계획에 의거 관할
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
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
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
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
여야 한다.

제4조(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

한 지도) ① 시장은 법 제10조
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
기 1회 이상 홍보·지도를 실시
하여 의식 개혁및 자원재활용
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필
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
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
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.

제5조(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

<삭 제>

제4조(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

한 지도) ① 시장은 「자원의 절
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
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
위하여 관계 사업자에 대해 홍
보·지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혁
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
여야 한다.

②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
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
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「1
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
지침」을 따른다.

제5조(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

근성 및 이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 수거함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수집장려금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등의 설치시 설치 장소 또는 지역의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수집장려금) <삭 제>

제8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제9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

2. 재활용지정 사업자,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

3. 법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·운영

4.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사업

5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

6.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으로서 영으

제8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 ① -- 법 제31조 제1항--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추진협회의--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로 정하는 사업

<신 설>

제9조(재활용 추진협의회) ① 시
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
하여 시민·단체·관련 학자 및
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하
남시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
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구성·
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
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
당, 여비 등 실비를 협의회 구성
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
의회의 기능은 「하남시 순환경
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」에 따
른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
가 대행한다.

제9조(재활용 추진협의회) 삭제

제10조(시행규칙) <삭 제>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의류수거함 설치비용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: 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자원재활용법)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128호, 2025. 11. 11, 일부개정]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0. 1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, 2025. 10. 1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[전문개정 2008. 3. 21.]